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27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배준영·강선영·김교흥

정일영 • 윤상현 • 허종식

박충권 • 박준태 • 조지연

유용원 · 이인선 · 모경종

김 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 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 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42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허법원"을 "특허법원, 해사법원"으로, "지방법원의지원(支院)"을 "해사법원의 지원(支院), 지방법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11 별표 1의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주지방법원란 다음에 해사법원 부산지원란, 해사법원 광주 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사법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해사법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 11]

해사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구역

명칭	관 할 구 역	
해사법원	전국	
해사법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사법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	제2조(설치) ① <u>특허</u>
<u>원,</u>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법원, 해사법원
원, 회생법원과 <u>지방법원의 지</u>	<u>해사법원의</u>
<u>원(支院)</u>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u>지원(支院), 지방법원의 지원</u>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	제4조(관할구역)
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	
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	
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	
역을 제외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u>구역: 별표 11</u>